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2 부

## 판 결

사 건 2015구합6353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10. 한 재산세 53,615,670원의 부과처분 중 51,489,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10. 한 재산세 24,332,620원의 부과처분 중 23,367,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서울특별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10. 한 재산세 23,798,660원의 부과처분 중 22,855,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15. 한 재산세 7,848,760원의 부과처분 중 7,537,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3. 8. 18. [redacted]부(출자금 8,000,000,000원, 지분율 61.2%)와 [redacted]출자금 5,072,000,000원, 지분율 38.8%)의 출자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1986년경 [redacted]시가 처음으로 원고가 발행한 40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3.12%를 획득하였고, 2014. 7. 11.경 원고의 주요주주는 정부(26.15%), [redacted](20.47%), [redacted]단체(서울특별시 3.34%, 경기도 1.02%, [redacted]시 0.57%, [redacted]시 0.55%, [redacted]남도 0.49%, [redacted]광역시 0.35%, [redacted]남도 0.34%, [redacted]광역시 0.32%, [redacted]광역시 0.28%, [redacted]북도 0.26%, [redacted]북도 0.22%, [redacted]남도 0.16%, [redacted]도 0.04% 등 합계 7.93%), 일반 주주 (39.21%) 등이다.

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30. [redacted]시 [redacted]구 조례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17.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redacted]구 조례 제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22. [redacted]시 [redacted]구 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21. [redacted]시 [redacted]구 조례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관할구역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감면 없이 2014년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순번 | 처분청 (피고) | 처분일자 | 재산세 부과금액 |
|---|---|---|---|
| 1 |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 2014. 9. 10. | 53,615,670 원 |
| 2 |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 2014. 9. 10. | 24,332,620 원 |
| 3 |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 2014. 9. 10. | 23,798,660 원 |
| 4 |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 2014. 9. 15. | 7,848,760 원 |

마.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15. 2.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부터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의 협의가 지체되어 납입이 지연된 것이고, 이 사건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문언은 반드시 설립시의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1986년 말 설립목적인 천연가스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에 근거하여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③ 입법자의 의도는 지방세 감면대상은 유지하되 감면비율만 축소하고자 한 것이며, 원고와 사실상 지위가 동일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전체 세액에 감면비율인 100분의 50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인 7.93%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고 하여 그 명문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외에 설립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계 법령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과 무관하게 그 시기를 불문하고 증자에 참여한 모든 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이 사건 조례를 통하여 감면되어 왔는데,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일부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 지방세제한특례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지방세 감면이 법정화되었고(당초 위 조항은 2013. 12. 31.까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하는 내용이었다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현행조항은 2016. 12. 31.까지 위 각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중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그 무렵 개정되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②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인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조례와 이 사건 감면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으로 규정한 데 비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없어졌고, 감면 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외에도 '설립'이라는 명문이 추가되는 등 그 감면대상에 관한 문언이 상이하다. 또한 '출연하여 설립한'이라는 문구 자체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해석상 자연스럽다.

④ 개정 입법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장기간 지방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점, 국세의 경우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이 없음에도 지방공기업 등이 지방세 감면을 당연시 여겨 사업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국가공기업까지도 지방세 감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과다 지원되어 온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주된 논거로 제시되었다.

⑤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종류로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공사(제49조) 및 지방공단(제76조)을 규정하면서, 제77조의3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1/10 이상 1/2 미만을 출자·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한 경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9. 25. 시행됨)이 제정되면서 같은 날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된 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위 제77조의3 등이 삭제되었는데, 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항).

⑥ 그런데 2014. 6. 1. 현재 원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율이 3.99%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을 모두 더하더라도 10%에 미치지 못하며,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정부와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국전력공사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의 경영 지도·감독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실질적 필요성 또한 크지 않다(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2. 5. 23.경 설립 당시부터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2014. 12. 31. 현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 비율이 10.36%에 해당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⑦ 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과 이 사건 조례의 문언,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배경, 그 밖에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취지는 종전 이 사건 조례를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아 온 지방공기업 등의 감면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기관 별로 감면비율도 축소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면 비율을 축소하는 외에 감면대상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설립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출자를 한 바 없어, 원고는 피고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민병국

판사 박혜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 관계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3.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되어 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상법」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30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2012. 3.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끝.